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18. 12. 31.(월) 총 3매(본문)		
담당 부서 기술기준과	담당 자 • 과장 안정훈, 서기관 김문성, 주무관 박준수 • ☎ (044) 201-3570, 3571			
보 도 일 시		2018년 1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1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올해 표준시장단가 3.39% ↑ …공사비 0.66% 상승 효과 28일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정 공고…표준품셈 231개 정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‘18년 12월 28일(금) 공고하였다.

*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·발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(표준시장단가/표준품셈)을 매년 상·하반기(7월,12월)에 개정하고 있다.

□ 총 1,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‘18년 하반기 대비 3.39%가 상승하였고, 공사비 총액은 0.66%의 상승*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
* 1,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(19.97%)을 고려하여 산출

○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,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,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하였다.

□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,317개(‘18년 1월 기준) 항목 중 231개 항목(토목 123, 건축 61, 기계설비 47)을 정비하였다.

○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(약 77%)은 전년 단가 대비 95~105% 수준이었으며, 토목부문 98.8%, 건축부문 98.6%, 기계설비부문 101.2%으로 평균 99.3%이었다.

○ (건설환경반영) 근로기준법 개정(3.20)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(68→52h)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가동시간을 변경*하였다.

* 예) 타워크레인 2,000h→1,776h(11%감), 불도저 1,400h→1,250h(11%감)

○ (편제개편) 토목·건축·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되어 있던 토공사,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*을 추진하였다.

* 50장 2,317항목(토목 1,413, 건축 475, 기계설비 429) → 43장 1,332항목 (공통 676, 토목 263, 건축 155, 기계설비 238)

□ '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 정보마당/훈령·예규·고시/공고)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(www.kict.re.kr, 기업지원/표준품셈)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.

붙임: 공사비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1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문성 사무관(☎ 044-201-35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
표준품셈	◆ 관리항목: 총 2,317항목(토목 1,413, 건축 475, 기계설비 429)								
	◆ 개정현황								
	구 분	계	토 목	건 축	기 계 설 비				
	계	231	123	61	47				
	적 정 검 토	178	98	43	37				
	보 완	41	19	14	8				
	신 설	12	6	4	2				
	◆ 개정항목 효과분석(표준품셈 적용 단가 기준)								
	구 분	평 균	토 목	건 축	기 계 설 비				
	현행대비	99.3%	98.8%	98.6%	101.2%				
표준시장단가	◆ 개정에 따른 공사비 분석								
	구 분	평 균	조 경	하 천	궤 도	공 동 주 택	학 교	오피스	
	증 감 율 (%)	조 경	(-)0.12	(-)0.12	-	-	-	-	-
		하 천	(-)0.03	-	(-)0.03	-	-	-	-
		궤 도	(-)0.43	-	-	(-)0.43	-	-	-
		조적미장돌	(-)0.32	-	-	-	(-)0.15	(-)0.48	-
		배관설비	(+)0.06	-	-	-	(+)0.06	-	(+)0.03
		평 균	(-)0.17	(-)0.12	(-)0.03	(-)0.43	(-)0.03	(-)0.48	(+)0.03
* 대상 샘플공사는 조경공사(102,000㎡), 하천공사(연장 7km), 궤도공사(연장 145km), 공동주택(12동 900세대), 학교(연면적 3,000㎡),									
◆ 관리항목									
합 계	토 목	건 축	기 계 설 비	비 고					
1,862	1,048	461	353						
◆ 공사비 등락률									
구 분	공 종 수	단 가 상 승 률 (%)	적 용 비 중	총 액 상 승					
총 합	1,862	3.39	19.97	0.66					
토 목	1,048	3.51	11.45	0.41					
건 축	461	3.04	7.28	0.22					
설 비	353	3.53	1.23	0.03					
◆ 개정내용									
○ 관공사(GRP관, PVC이중벽관 등), 도로배수시설(V형측구, L형측구 등), 기계설비 배관공사(배관, 용접)에 대한 건설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100개 공종 단가개정 및 보정 신설									
○ 그 외 1,762개 공종에 대하여는 건설분야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 지수를 반영									